

성균관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

학생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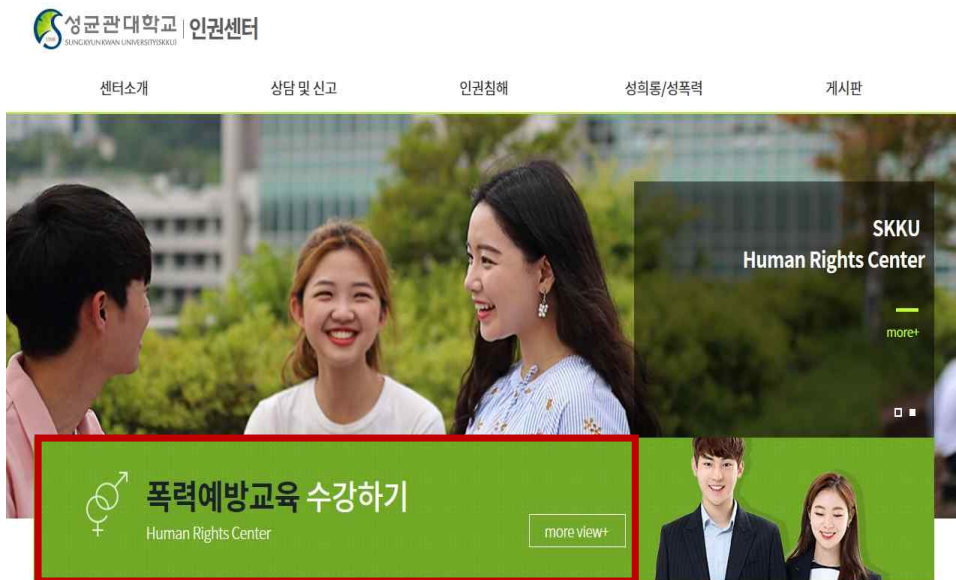
홈페이지 접속

▣ 인권센터 홈페이지 URL(<https://helper.skku.edu/helper/index.do>)로 직접 접속



▣ 성균관대 홈페이지 (<https://www.skku.edu>) 하단 “인권센터” 아이콘 클릭하여 접속





인권센터 메인화면의 “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” 클릭

성균인 로그인(Kingo ID, Password와 동일함)

성균인 로그인

아이디

비밀번호

☐ ID 저장하기

- 학생은 최소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/가정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여야 함
- 교육소개 화면에서 교육의 법적 근거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



폭력예방교육

알림마당

소개

교육수강하기

이수증명서

성폭력예방

가정폭력예방

1.법적근거
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2.추진목표

-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 보호
- 성폭력을 예방·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
-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

3.교육대상

- - 성균관대학교 구성원 전체

4.교육횟수 및 시간

- 1회 / 년
- 1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

5.교육방법

폭력예방교육

소개

교육수강하기 >

이수증명서

※ 교육과정을 선택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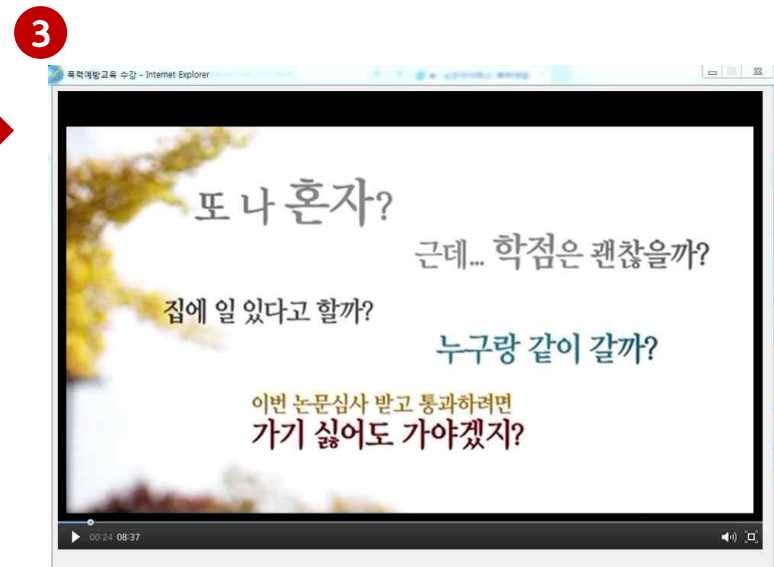
년도 2017년 ▼

선택	교육과정명	교육기간	총교육차시	이수차시	미이수차시	미이수부(미수일)	교육점수
선택	2017년 _학생성폭력예방교육	2017.05.15 ~ 2017.12.31	0	0	0	미이수	0
선택	2017년 _학생가정폭력예방교육	2017.05.15 ~ 2017.12.31	0	0	0	미이수	0

교육과정명 > 2017년 _학생성폭력예방교육 | 교육진행상태 > 교육수강

번호	과목명(교육내용)	시간(분)	인정시간	과목분류	수강여부(수강일)
1	성폭력예방교육(학생)	29	1	성폭력	수강하기

- '교육수강하기' 메뉴를 클릭하여 수강할 교육과정 선택
- '수강하기'버튼을 클릭
- 교육영상 시청



평가 문제 화면

평가하기

성명

소속

번호	평가문제 지문
1	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상하 관계의 권력관계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. ☐ 예 ☐ 아니오
2	성희롱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. ☐ 예 ☐ 아니오
3	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했다면, 이는 회사 내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므로 성희롱이 성립 될 수 없다. ☐ 예 ☐ 아니오
	길을 지나가는 18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에게 성희롱을 해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권력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현행법상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, 성희롱은 현행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도 되지 않는다.

제출하기

- 교육영상 수강 완료 후 평가 문제 풀기
-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이수 완료

